

대통령 개헌안 3차 발표 '키워드'

권력의 '분산' ... 그리고 '균형'

청와대가 22일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은 '권력의 분산과 균형'으로 압축·요약된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나눠 힘의 균형을 적절히 이루겠다는 것이다.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삭제, 대통령 특별사면권 제한, 감사원의 독립기구화, 감사위원 선출권 축소, 헌법재판소에 소장 임명권 이양 등은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관련된 내용이다. 반대로 예산법률주의 도입을 통한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 정부 법률안 제출 요건 강화, 국회 동의 대상 조약 범위 확대 등은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포함시킨 내용들이다.

다만 청와대는 아권이 대통령 권한 축소의 일환으로 요구한 국무총리의 추천 및 선출권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개헌안에 포함된 대통령 권한 축소 내용에 대해 총리 추천권마저 내주게 되면 오히려 정부와 국회간 힘의 균형이 무너지게 된다는 게 청와대의 인식이 반영됐다.

대신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현행 대통령 중심제 아래서 대통령과 총리 사이의 권력의 균형을 이루겠다는 게 청와대의 구상이다.

헌법 제86조 2항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는 조항에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부분을 삭제해 국정운영에 있어 총리의 자율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할 경우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는 항상적 긴장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행 체제 유지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여소아대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한 총리가 정당을 달리하면 이중권력상태가 계속 돼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대통령이 국회추천을 거부할 경우 정국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체제 아래서도 국회 동의를 얻어야 총리를 임명할 수 있는 만큼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적당한 균형과 견제원리가 작동하고 있다.

국가원수 지위 삭제·특별사면권 제한·감사원 독립·헌재소장 임명권 이양 등 대통령의 권한 축소 의미해

국무총리는 대통령 임명제 유지키로 대신 총리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총리 사이 균형 이뤄 예산심의권 등 국회 권한도 강화

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아울러 국회에 총리 선출권을 줄 경우 사실상 의원내각제가 된다는 인식도 현행 제도 유지에 많은 영향을 줬다.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권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한 것도 대통령의 권한 축소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장의 경우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한 것도 대통령 권한 분산의 일환이다.

대통령의 현재소장 임명권 조항(111조 4항)을 삭제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논란이 많았

<대통령 헌법개정안 주요내용 - 권력구조·헌법기관의 권한>

1 전문 및 기본권 분야	2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	3 권력구조, 헌법기관의 권한
선거제도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연령 현 19세→18세 • 선거 비례성 원칙 명시(국회 의석 투표자 의사 비례 배분) • 선거운동 자유 최대한 보장 		
권력구조		
대통령 권한 분산·국회 권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 삭제 2 대통령 특별사면시 사면위원회 심사 의무화 3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중 호선(대통령 인사권 축소) 4 국무총리 권한 강화 '대통령 명을 받아' 문구 삭제 5 감사원 독립기구화, 감사위원 현 대통령 임명→국회 선출 6 국회의원 10명 이상 동의 후 정부 법률안 국회 제출 7 예산법률주의 도입, 국회 예산심의권 강화, 정부예산안 제출시기 30일 축소 8 국회 동의 대상 조약 범위 확대 		
대통령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단임제→4년 연임제 (문재인 대통령 적용 안됨,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 		
사법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법원장 인사권 분산, 절차적 통제 강화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 • 일반법관 임기제 폐지 • 배심제 등으로 국민들 재판에 참여 • 평시 군사재판 폐지 비상계엄 선포 시와 국외 파병 시에만 설치운영 		
헌법재판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재판관 구성 다양화 '법관 자격' 없어도 가능 • 대통령 현재 소장 임명권 조항 삭제 		

<그래픽=뉴스시 제곱>

던 임기문제를 해결하고 현재의 독립성과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다. 반대로 국회의와의 권력 균형을 맞추기 위한 마련한 입법권 강화 조치로는 정부 법률안

제출 요건 강화를 들 수 있다. 현행 헌법 52조에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된 조항을 '정부는 국회의원의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

에 법률안을 제출가능하다'고 바꾸며 국회 입법권을 강화했다.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해 예산법률주의도 도입하고 국회에 충분한 예산심사 기간을 주기 위해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 시기를 현행보다 30일 앞당기도록 했다. 국회 동의 대상 조약의 범위도 확대해 법률로 정하는 조약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했다.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절차적 통제를 강화한 것은 사법권력 분산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토록 했다. 일반법관의 경우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과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했다.

또 기존에 대법원장이 행사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에 대한 선출권을 대법관 회의로 이관했다.

일반법관의 임기제를 폐지해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였다. 이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징계처분에 '해임'을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반대로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한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 확보 차원이다. 또 국회에 충분한 예산심사 기간을 주기 위해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 시기를 현행보다 30일 앞당기도록 했다.

국회 동의 대상 조약의 범위도 확대해 법률로 정하는 조약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한 것도 국회 입법권 강화를 위한 조항이다. /김진성 기자

靑, 개헌안 발표 마무리... 향후 절차는?

문 대통령 26일 전자결재 방침
국회서 5월 4일까지 합의안 도출
"법 개정 마지노선 내달 27일"

청와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앞서 세 차례에 걸친 헌법 개정안 발표를 마쳤다. 해외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오는 26일 전자결재로 개헌안을 발의하면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6·13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투표 실시 여부를 둘러싼 향후 80여일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청와대 헌병도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지

도부에 개헌안 보고와 함께 전문을 전달했다. 해당 개헌안은 법제처의 심사를 거친 뒤, 이낙연 국무총리가 26일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해 개헌안을 의결하고 문 대통령이 당일 전자결재하면 국회로 넘어오게 된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이후 국회에서 필요한 물리적 시간은 78일이다. 국회 심의기간 60일(개헌안 공고 20일 포함)에 국회 의결 후 공고 기간 18일을 더한 수치다. 역산하면 오는 26일까지 개헌안을 발의하고 5월25일까지 국회가 의결을 마쳐야 6월13일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국민투표가 가능하다.

다만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다고 해서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안

마련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국회가 개헌 절차를 합의해 심의기간을 '하부'로 단축할 경우 대략 5월 30일이나 4일까지 국회 개헌안을 만들면 된다. 합의된 개헌안은 20일간의 공고를 거쳐, 5월25일 국회 의결과 6월13일 국민투표가 가능하다.

청와대가 국회 합의안 마련시 대통령 안을 철회하겠다고 한 만큼 5월초 국회 합의안을 만들면 해당 안으로 국민투표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개헌안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등록을 받아야 하는데, 청와대는 법 개정의 마지노선을 다음달 27일로 정하며 국회를 압박했다. /김진성 기자

자치분권·균형발전 대응책 모색

도, 지방분권 지역회의... 스페인·라틴아메리카 등 사례 공유
자율성 강화 등 주민 생활에 큰 영향으로 개헌 필요성 재확인

전북도는 22일 오후 전북대학교 인문사회관에서 한국정치학회와 함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회의를 열고 전북도의회,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들과 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대응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승일 전북도 행정부지사, 전북대 이남호 총장, 한국정치학회 김의영 회장, 전북도의회 양용모 의원, 우석대 이병렬 교수, 전북대 신기현 교수, KBS전주방송 김명성 국장, 전북

일보 백성일 부사장, 지방분권국민행동 김택천 대표 등이 참석, 지방분권, 균형발전, 지방선거 관련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실제 사례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에너지 분야의 분권시대를 통해 미세먼지 해결 및 친환경에너지 전환과 같은 사회적 이슈의 해결에 지방분권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했다.

또한 스페인 라틴아메리카 등 해외 사례를 통해 자치분권이 지역의 자율성 강화, 기초 인프라와 보건, 교육 등 주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북에 맞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군산에서 열리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워크숍에 참석해 자치분권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